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11월 12일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1. 제안이유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하는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가 위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령이나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나, 규칙 등의 제·개정시에 법령 또는 조례의 입법 취지나 위임의 범위에 합치하는 지 등의 여부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칙 등의 행정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운영을 방지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규칙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9조 제1항)
- 나. 규칙을 입법예고 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입법예고안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9조 제2항)
- 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 하도록 함(안 제19조 제2항)

3.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6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구의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 나. 성명 (법인·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39길 40(을지로6가 18-14) 의회사무과
- 전화 : 02)3396-8166 팩스 : 02)3396-9055
- E-mail : moonsun1004@junggu.seoul.kr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 은 미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	--

발의년월일 : 2025년 11월 5일
발 의 자 : 양은미 의원 외 5인
(조미정의원, 윤판오의원, 송재천의원
소재권의원, 손주하의원)

1. 제안이유

구청장이 제정 또는 개정하는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28조에 따라 법령 또는 조례가 위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령이나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그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으나, 규칙 등의 제·개정시에 법령 또는 조례의 입법 취지나 위임의 범위에 합치하는 지 등의 여부를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칙 등의 행정 편의적이고 자의적인 운영을 방지하여 주민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규칙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9조 제1항)
- 나. 규칙을 입법예고 하는 때에는 10일 이내에 그 입법예고안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19조 제2항)

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 하도록 함(안 제19조 제2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국회법」 제98조의2(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8조(규칙 등의 제출 등)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또는 별첨

4. 조례안 : 붙임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 및 제20조를 각각 제20조 및 제21조로 하고,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규칙 등의 제출 등) ① 구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나 법령이나 조례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규칙·훈령·예규·고시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서 직접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무에 관하여 구청장이 정한 규칙은 제외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규칙을 입법예고 하는 때(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는 입법안 심사를 요청하는 때를 말한다)에는 10일 이내에 그 입법예고안을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앞의 “제5장 자치법규의 정비”를 삭제한다.

제20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장 자치법규의 정비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19조(규칙 등의 제출 등) ① 구</u> <u>청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u> <u>한 사항이나 법령이나 조례를</u> <u>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u> <u>정한 규칙·훈령·예규·고시</u> <u>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된</u> <u>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의회</u> <u>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u> <u>한다. 다만, 법령에서 직접 규</u> <u>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무에</u> <u>관하여 구청장이 정한 규칙은</u> <u>제외할 수 있다.</u></p> <p><u>② 구청장은 규칙을 입법예고</u> <u>하는 때(제6조제1항 단서에 따</u> <u>라 입법예고를 생략하는 경우에</u> <u>는 입법안 심사를 요청하는 때</u> <u>를 말한다)에는 10일 이내에 그</u> <u>입법예고안을 의회 소관 상임위</u> <u>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u></p> <p><u>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u> <u>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사항을</u> <u>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u> <u>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의회 소</u> <u>관 상임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u></p>

제5장 자치법규의 정비

<신 설>

제19조 · 제20조 (생략)

다.

<삭 제>

제5장 자치법규의 정비

제20조 · 제21조 (현행 제19조 및
제20조와 같음)